

문 화 산 업 진 흥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기 관 명 (부 서 명)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제출 연월일	2026.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단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함)을 진행해온 바 있음.

다만, 방송영상진흥진흥재단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90호, 2026. 4. 28. 공포, 2026. 7. 29. 시행)됨에 따라, 대출계정의 수입과 지출 항목을 정하고 운영·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콘텐츠진흥원에 설치된 대출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콘텐츠진흥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대출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대출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기획·제작·유통·운영에 필요한 자금대출
2. 대출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대출계정의 운용)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제36조(대출계정의 회계·결산 및 관리 등) ①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의 회계를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콘텐츠진흥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콘텐츠진흥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대출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대출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콘텐츠진흥원에 설치된 대출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콘텐츠진흥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대출계정의 회수금 · 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대출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기획 · 제작 · 유통 · 운영에 필요한 자금대출 2. 대출계정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항

제35조(대출계정의 운용)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에 여유자금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제36조(대출계정의 회계·결산 및 관리 등) ①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의 회계를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콘텐츠진흥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콘텐츠진흥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대출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대출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3245